

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

1. 의의

세무조사 결과 등 과세예고 통지를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.

즉,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권자의 부당한 과세권 행사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전구제 절차이다.

2.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대상

- 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
- ㉡ 세무서장·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(현지시정 조치 포함)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
- ㉢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
- ㉣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(다만,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)

3. 청구절차

(1) 청구기간

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과세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달하기까지는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.

(2) 청구제외

- ㉠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
- ㉡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
- 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

4. 결정

(1) 결정기간

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(2) 결정유형

- ㉠ 채택: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㉡ 불채택: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㉢ 심사제외: 청구기간 경과 또는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
기타 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어 일부를 채택하거나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유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.

※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 유보

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은 유보된다.

(3)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

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전적, 예비적 통지에 대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5. 과세적부심사 진행 중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

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. (대법원 2016.12.27.선고, 2016두 49228 판결).

6. 조기결정청구권

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.

